

#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제정 1996· 7· 26 조례 제 159호  
 전문개정 1999· 1· 11 조례 제 272호  
 개정 2000· 7· 28 조례 제 339호  
 (이천시문화기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1· 3· 7 조례 제 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3· 7· 30 조례 제 462호  
 개정 2008· 11· 4 조례 제 735호  
 일부개정 2015· 12· 31 조례 제1211호  
 일부개정 2016· 12· 30 조례 제1292호  
 일부개정 2018· 11· 16 조례 제1441호  
 일부개정 2021· 6· 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 11· 1 조례 제20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과 4-H회를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의품목별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08· 11· 4>

1. 농업인의품목별생산조직체 :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 (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 및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술 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단위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및 4-H회
2. 농업전문경영인 :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자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제3조(육성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육성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영

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삭제 <2008·11·4>

③ 육성기금의 조성 금액은 15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12·30, 2018·11·16>

④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개정 2023·11·1>

[제목개정 2016·12·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일부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농촌사회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5·12·31, 2018·11·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기능)** 제5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안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지도사가 된다.

〈개정 2001·3·7〉

**제9조의2(회의록 등)** 심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0조(지원사업 대상)** ① 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4, 2003·7·30〉

1.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품목별생산조직체의 사업
2. 선진 해외농업 연수 및 교류사업
3.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
4. 후계농업인육성을 위한 4-H회 교육행사, 장학금, 과제활동 지원
5. 기타 심의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조직체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사업비 지원은 육성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되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3·7·30, 2008·11·4〉

1. 제10조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에게 사업소요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0조제2호에 의한 보조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의 5급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0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보조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4. 삭제 〈2008·11·4〉
5. 제1호에 의한 지원금은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6. 제1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조직체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육성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1·3·7, 2018·11·16>

1. 기금운용관 : 농업진흥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지도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8>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8>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다. <개정 2021·6·2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8 조례 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7 조례 제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7·30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4 조례 제7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천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2008 회계년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천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